

CBWF 이슈페이퍼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발행일 | 2020. 02. 24

발행인 | 이남희

홈페이지 | www.cbwf.re.kr

충북 청소년 성평등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이현주 | 충북여성재단 선임연구위원

목차

1. 연구배경
2. 충북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추진 여건
3. 충북 청소년 성평등 인식조사 및 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현황 조사 결과
4. 정책제언

1. 연구배경

- 최근 미투, 스쿨미투, 교실 속 여성혐오, 불법촬영 편파수사 등을 통해 부각된 한국 사회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성평등’이며, 지역의 성 주류화 정책과 성평등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
- 청소년들의 성역할 인식은 과거보다 진전은 되었으나 성별 격차는 늘어나고 있음. 남성들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고,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 혼용하며, 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으로 정의함

- 청소년들의 성평등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이며,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두 번째 소과제가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임. 또한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성평등 의식 · 문화 확산과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 성평등 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음
- 이에 충북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경험, 중등학교 성평등 교육 현황 분석 및 성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충북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음

2. 충북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추진 여건

- **(법적근거)** 충북의 경우 충청북도 및 11개 시 · 군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두 곳의 지자체(보은군, 영동군)를 제외한 충청북도 및 9개 시 · 군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양성평등 교육 관련 조항이 있는 곳은 8곳(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이 있는 곳은 4곳(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임

[표 1] 충청북도 및 9개 시 · 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양성평등 교육 관련 조항

| 시군 | 조문 |
|------|---|
| 충청북도 | 제33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 청주시 | 제34조(양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 가정 · 학교 · 영유아시설 · 사회교육시설 · 기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제46조(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충주시 | 제15조(양성평등 교육) 시장은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양성평등 관련 기관 · 시설 등)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연구 · 교육 기관이나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이하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제천시 | 제28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연구 · 교육 기관이나 양성 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시군 | 조문 |
|-----|--|
| 옥천군 | 제21조(양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어린이집·사회교육시설·기업·공공기관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증평군 | 제18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증평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 진천군 | 제24조(양성평등 의식제고) 군수는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 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괴산군 | 제26조(양성평등 의식제고) 군수는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 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음성군 | 제22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단양군 | 제24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군수는 가정·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자료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2019년 9월 기준)

- **(추진체계)** 충청북도의 10개 교육지원청 중 양성평등 교육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은 8개이고, 2개 교육지원청(음성, 진천)은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자가 부재함. 양성평등 교육 업무는 없고 성교육(음성)이나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진천) 업무만 명기되어 있음

[표 2] 충청북도 시군교육지원청 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 담당 부서 현황

| 지역 | 부서 | 담당 | 담당업무 |
|----|---------|-------|--|
| 청주 | 체육건강과 | 보건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공공기관 성교육 추진 및 관리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 존중토론회 운영 • 양성평등 교육 운영 관리 • 성별영향평가 업무 |
| 충주 | 체육평생건강과 | 보건급식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공공기관 성교육 추진 및 관리 • 양성평등 교육 및 성존중 토론회 |
| 제천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성인지 제외) •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
| 보은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 교육(성인지 제외) •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

| 지역 | 부서 | 담당 | 담당업무 |
|-------|-----|-------|---|
| 옥천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교육 • 학생 성교육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
| 영동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교육 및 흡연예방교육 • 양성평등 교육 |
| 증평·괴산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성인지 제외) • 학생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
| 진천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지도·관리 •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
| 음성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공공기관 성교육(양성평등)에 관한사항 |
| 단양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성인지 제외)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

자료 : 충청북도 시 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2019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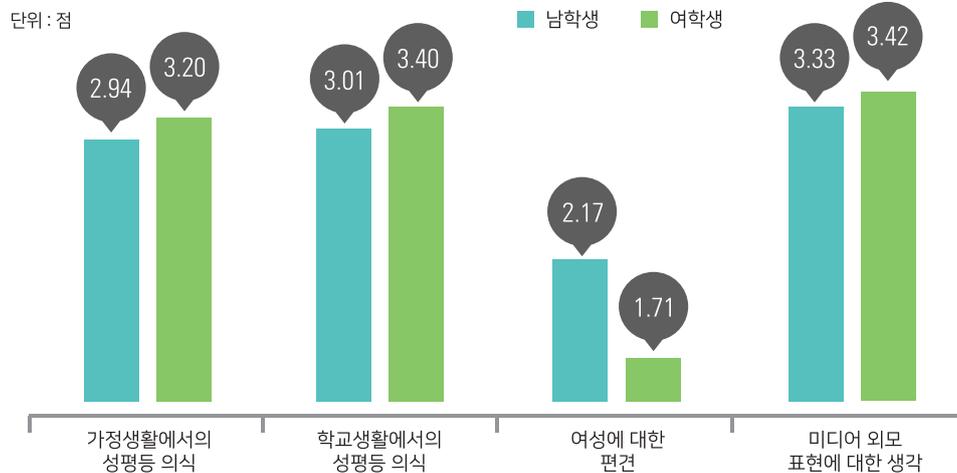
- 충청북도 교육지원청에서 양성평등 교육 또는 성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 또는 보건급식 부서임. 추진체계 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을 비롯한 충북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성평등 교육을 건강, 보건 방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성교육을 담당하는 건강, 보건 관련 부서에 성평등 교육을 배치하였다는 점은 성평등 교육을 성교육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그 이상의 교육적 역할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3. 충북 청소년 성평등 의식조사 및 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현황 조사 결과

1) 청소년

- **(성평등 의식)**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의식 모두 남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여학생보다 낮은 수준이며, 남학생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더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주 단위에 따른 성평등 의식은 시지역 청소년이 군 지역 청소년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등과 같은 가사일과 집안일의 결정권에 대해 여학생과 남학생의 의식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의식 부분에서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와 같은 직업적인 불평등이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와 같은 능력 면에서의 불평등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와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대우를 원한다'와 같은 문항에서 남학생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 충북 청소년 성평등 의식

-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서 '도구 또는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과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복잡한 원리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은 남성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 본인은 성차별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친구들은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학생의 가족보다는 여학생의 가족이 성차별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내가 타인에게 한 비하 표현의 비율보다 타인이 나에게 한 비하 표현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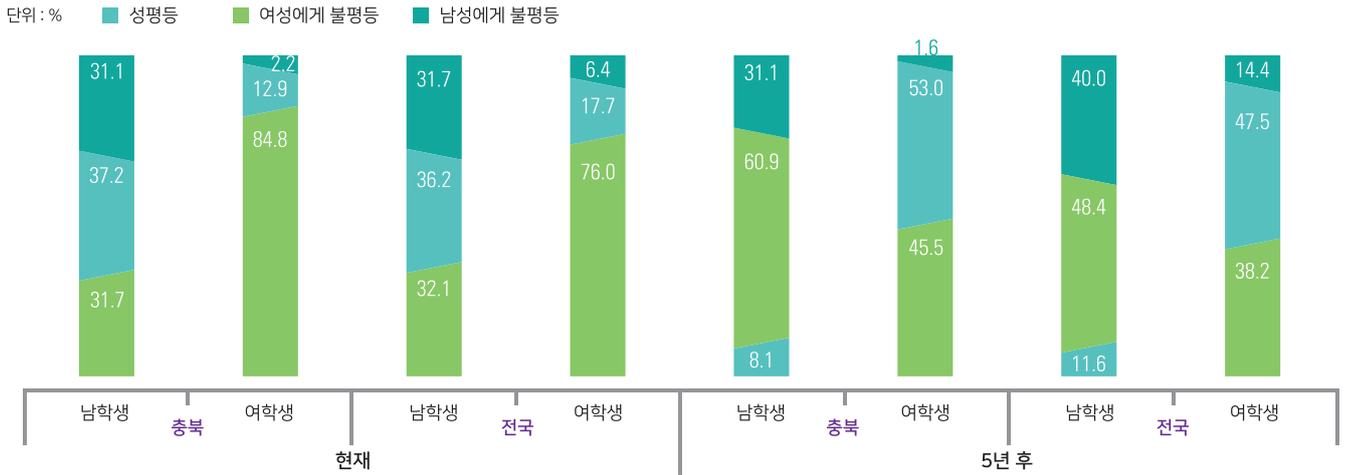
• **(학교생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을 더 많이 하고, 70%이상의 학생들은 학교에 탈의실이 없거나 탈의실이 있어도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스쿨미투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반면에 남학생은 '스쿨미투 운동으로 남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와 '스쿨미투 운동 이후에도 학교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의 문항에서 여학생보다 더 많이 그렇다고 답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 수준 및 사회인식)**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청소년들은 25.0%만이 성평등한 사회로 보았으며, 58.4%는 '여성이 불평등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음. 5년 후에는 56.9%가 성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26.8%는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 사회'라고 전망함

-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남학생은 31.7%에 그쳤으나, 여학생은 84.7%가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봄으로써 성별에 따른 양성 평등 의식 수준이 매우 다른 것으로 확인됨

- 5년 후 전망에서 여학생의 45.5%는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고 응답해, 8.1%의 남학생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31.1%의 남학생은 오히려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을 것이라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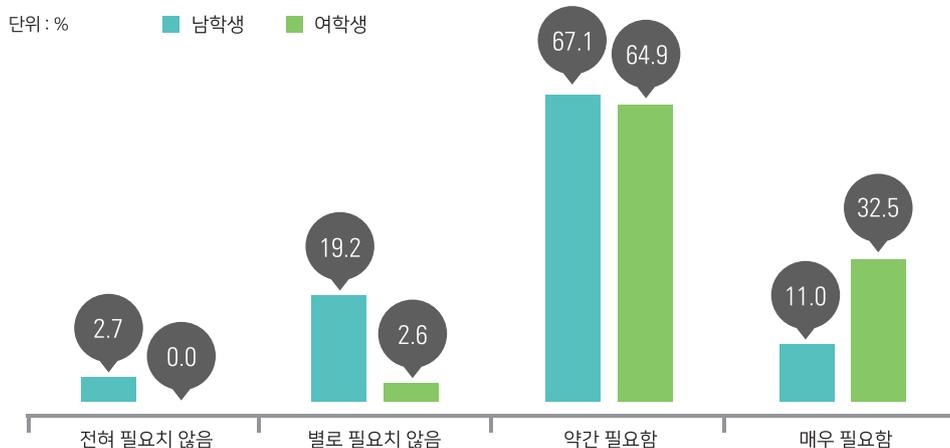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과 여학생의 현재 및 5년 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주: 전국은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임

- 청소년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모두에게 동등한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방송이나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범죄 예방 홍보와 캠페인, 학교나 학교 밖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음

- **(양성평등 교육 실태)** 모든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았고,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외부강사나 보건교사 그 밖에 일반교과목 교사나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 교육의 진행은 주로 특강형태(96.8%)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 가정통신문이나 유인물(91.3%), 글짓기나 캠페인 등의 참여활동(80.7%), 시청각교육(79.8%) 순으로 진행됨
- 77%의 청소년들이 양성평등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교육이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의 97.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32.5%, 약간 필요하다 64.9%)고 보았고, 남학생의 78.1%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1.0%, 약간 필요하다 67.1%)고 응답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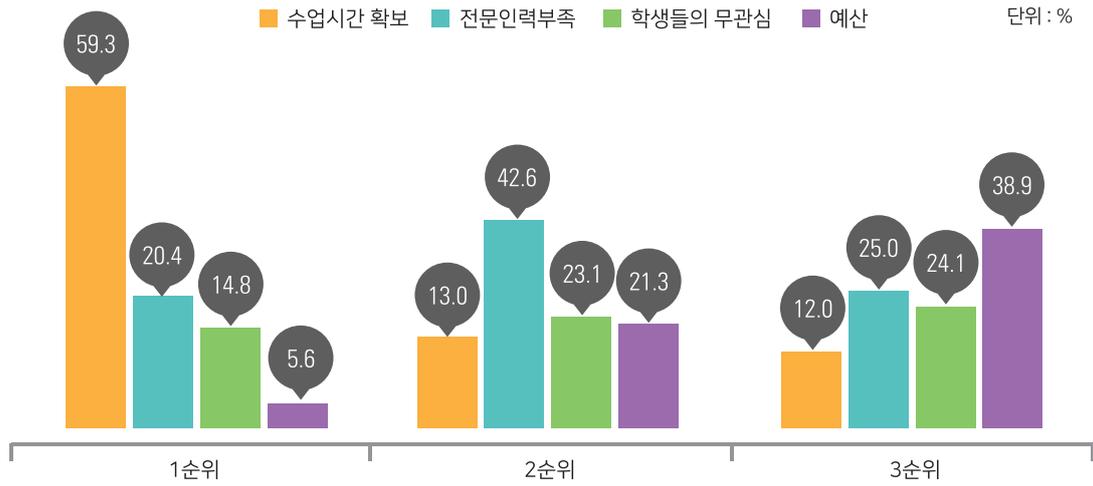


[그림 3]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 양성평등 교육이 진행된 총 시간(횟수)이나 교육이 진행된 시간, 장소, 내용, 교육 방법에 대해 청소년들은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모든 문항의 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희망하는 양성평등 교육방법은 특강형태로 조사됨. 청소년들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일방적인 강의 방법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선호하는 희망 교육방법도 특강 형태였음. 따라서 양성평등 교육을 특강 형태로 진행을 하되 참여활동과 시청각 자료 활용, 토론식의 적절한 조합이 요구됨
- 양성평등 교육의 정규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해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65%)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32.6%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정규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여학생의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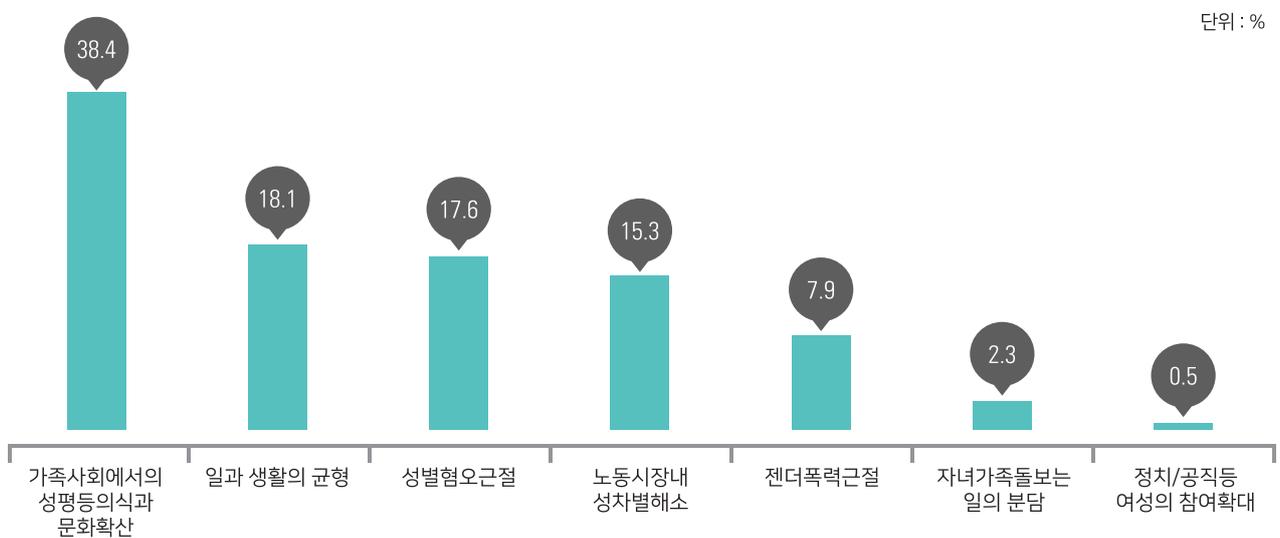
2) 교사

- **(성평등 교육 현황 및 실태)** 지난 1년간 조사대상 학교의 양성평등 교육 담당 교사 중 양성평등 교육만 담당하는 교사는 전체 44.4%에 불과했고, 50.9%는 네 가지 교육(양성평등 교육,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모두를 다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 학교의 절반 이상이 양성평등 교육 예산이 아예 없거나 50만원 미만인 학교가 50.9%로 나타나 교육 예산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외부강사를 활용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약간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82.5%였으며, 불만족 이유로 '강의자료 등 자료준비 부족(21.1%)'과 '수업방식이 적합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음(21.1%)', '이론식 교육으로 현실에 맞지 않음(15.8%)' 등이 주로 지적되었음
 - 교사들의 74.1%는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가 약간 있다고 보았고, 17.6%는 매우 효과가 있다고 본 반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8.3%에 그쳤음. 그러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에서는 23%의 학생들은 양성평등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음
 - 거의 모든 교사들은 양성평등 교육이 약간 필요하거나(47.2%), 매우 필요하다(50.9%)고 생각하였으며, 학생 개인별 적정 이수시간을 평균 3.52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 교육의 정규 교과목 개설에 대해 교사들의 약 90%는 약간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약 10%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함.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이 불필요하다는 청소년들의 비율(32.6%)과는 격차가 나타남
 - 교사들은 양성평등 교육 추진의 어려운 점으로 수업시간 확보(59.3%), 두 번째 어려운 문제로 전문 인력 부족(42.6%), 세 번째 어려운 점으로 예산(38.9%)이라고 답함



[그림 4]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

- 양성평등 교육의 개선점으로는 '소그룹 토론방식 수업(13.9%)', '다양한 사례 및 교육자료 준비를 통한 학생 흥미 유발(12%)',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교육(8.3%)', '전문 강사 필요(6.5%)' 등이 제시되었음
- **(성평등 의식)** 양성평등 교육 담당 교사들은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스쿨미투 운동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담당 교사들의 전반적인 지지는 청소년 보다 약간 낮고, 스쿨미투 운동으로 남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청소년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양성평등 교육 담당 교사들의 87%는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으나, 5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64.8%)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남학생(60.9%)이나 여학생(53.0%)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34.3%의 교사들은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일 것이라고 전망함
 - 우리 사회의 성 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 정책으로 '가족, 사회에서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38.4%)'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성평등 교육과 사회 캠페인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림 5] 양성평등 교육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4. 정책제언

1. 조례 개정 및 제정

- 1)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양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 교육 실시와 관련한 조항이 없는 충청북도 및 3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영동군)의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 2) 성평등 교육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성평등 교육 조례에는 추진체계를 비롯한 교육수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아래의 제언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성평등 교육 추진체계 정비

- 1)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 배정 필요
 - 교육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
 -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연계
- 2) 도 여성가족정책과 내 청소년 성평등 교육정책 담당자 배치
 -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평등 교육 실행에서의 당면과제 공유 및 협력
 - 교육부-여가부, 지자체-교육청 협업이 필요함

3. 의무시수 배정 및 학교평가 반영

- 1)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무시수 배정 필요
- 2) 의무시수 배정과 함께 운영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 시행 병행
 - 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제공
 - 학교 및 교장·교감 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4. 교사연수 강화

- 1) 교장·교감 연수를 비롯한 교사 연수 과정에 필수 교과목으로 성평등 교육을 선정하여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2) 사범대를 포함한 교대의 예비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
- 3) 보수 교육
 - 교사, 예비 교사, 학교 행정직원,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5. 맞춤형 교육 시행

- 1) 성별, 거주 단위별 대상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내용 및 방법 모색

- 각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 수행
- 2) 성평등 연극, 젠더 토크콘서트 등과 같은 토론형, 체험형, 참여형 교육 등 교육 방법 다양화

6. 성평등 진로교육 제공

- 1)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7-1-3 공공부문 성평등 교육확대'의 '7-1-3-3 학교에서의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2) 진로/진학 상담교사 대상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및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진학교육/상담이 제공되어야 함

7. 전문 강사 양성, 강사 풀 구축 및 콘텐츠 제공

- 1) 성평등 교육 강의안은 단체나 개인 별 개별 제작되고 있으며, 강의안 수준을 검증할 시스템이 부재함
- 2) 성평등 관련 이슈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콘텐츠의 적시 업데이트가 중요하며, 관련 자료의 공유가 요구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 관련 콘텐츠 활용을 위한 홍보
- 3) '충북형 성평등 교육 센터'(가칭) 운영을 제안함
 - 전문 강사 양성, 강사 풀 구축 및 관리와 함께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
 - 지역의 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 또는 교사들이 관련 소모임을 통해 스스로 연구하고 논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비용, 장소 등을 지원하여 성평등 교육 콘텐츠 및 교육 방법 등의 질적 제고를 도모함
 - 공모전이나 사례 공유회 등을 통해 개발된 교육 콘텐츠, 교수 기법, 교육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여 성평등 교육 관련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확산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8. 페미니즘 교육으로의 확대

- 1) 성평등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수행중인 성별 고정관념 완화 또는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지금의 성평등 교육으로는 성평등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이해하거나 개인 간 나타나는 차이를 존중하는 개인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만을 강조하게 됨
 - 성평등을 역사적인 차별 구조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가치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페미니즘 교육 수행이 필요함

이현주 · 박지혜(2019), 「충북 청소년 성평등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를 요약, 재구성함